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서미화 · 전진숙
김문수 · 안태준 · 이주희
윤건영 · 임미애 · 김남희
양부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아동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,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·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

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99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(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일반경쟁·일반입찰·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부친 경우를 제외한다)와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

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</u> <u>부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</u> <u>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</u> <u>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</u> <u>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</u> <u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</u> <u>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</u> <u>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</u> <u>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</u>